

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 내규

제1조 (목적) ①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(이하에서는 '대학원'이라 한다) 기숙사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기숙사는 기숙사 사생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동생활의 훈련숙달을 도모함으로써 장차 봉사정신을 갖춘 실력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
제2조 (조직) ① 기숙사에 사생의 생활지도 및 기숙사 운영을 전담하기 위하여 주임교수를 둔다.

②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제3조 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(이하에서는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대학원장, 학생부원장 및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.

③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조 (위원회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숙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기숙사의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숙사 운영을 위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5조 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입사허가) ① 기숙사의 입사 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 여석이 있을 때에는 수시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 (퇴사처분) 사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.

1.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2. 납부금을 체납한 자
3. 기타 기숙사 생활에 적합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8조 (납부금) 사생은 입사비 외에 사비·숙식비 및 기타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 (운영세칙) 기숙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 (2009. 2. 23. 제정)

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